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38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2
제138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7
제139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제13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18
제13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2
제13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
제139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13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139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13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13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46
제139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
제1400호 : 서울특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14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88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물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및 구민 생활 편의 증진에 관한사항
3. 구민의견 개진 및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미디어 홍보 관련 부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및 정보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7조(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 및 거주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사용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인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소셜미디어의 사업내용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구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셜미디어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게시물의 관리 (안 제3조 ~ 제4조)
- 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8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하여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전문기관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공무원에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훈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 이동편의 시설 보강 등 지원내용(안 제6조)
- 마.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사.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0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구 관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90일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 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수 등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거주외국인의 처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범위)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
3.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①구청장은 주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인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기관·시설·단체의 업무 관련자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4조~제7조)

다. 업무의 위탁내용을 명시함 (안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제16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1호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 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원체계)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 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조)
- 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및 사업 등의 수행, 조직 및 인력, 지원체계, 이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7조)
- 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
- 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마.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바. 장애인기업활동 구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4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4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 추석에 30,000원씩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 월 <u>4만원</u> 2. · 3. (생략) <u><신설></u>	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 ----- ----- ----- -----. 1. ----- <u>5만원</u> 2. · 3. (현행과 같음) <u>4. 설, 추석에 30,000원씩 지급</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고, 보훈의 달에 지급하던 위문금을 설과 추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림(안 제10조제1호)

나. 설과 추석에 위문금 3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5호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 추석에 30,000원씩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문금의 지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설, 추석에 30,000원씩 지급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의 달에 지급하던 위문금을 설과 추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설과 추석에 위문금 3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6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본문 중 “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제3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u>법 제12조에 따라</u>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u>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u>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2개 이상의 수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21조 (삭제)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보조할 수 있다.</u> 1. ~ 10. (생략)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때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삭 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 법령”에 맞추어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제21조 삭제

-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앴.

나. “영유아 보육법령”에 맞추어 조례 내용 일부 정비 : 제12조, 제33조, 제34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3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출산양육 지원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별표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비고</th></tr><tr><td>-</td><td>-</td><td></td></tr><tr><td>둘째 아이</td><td>500,000</td><td></td></tr><tr><td>셋째 아이</td><td>1,000,000</td><td></td></tr><tr><td>넷째 아이이상</td><td>3,000,000</td><td></td></tr></table>	구분	지원내역	비고	-	-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이상	3,000,000		< 별표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비고</th></tr><tr><td>첫째 아이</td><td>200,000</td><td>-</td></tr><tr><td>둘째 아이</td><td>1,000,000</td><td></td></tr><tr><td>셋째 아이</td><td>2,000,000</td><td></td></tr><tr><td>넷째 아이</td><td>3,000,000</td><td></td></tr><tr><td>다섯째 아이 이상</td><td>5,000,000</td><td></td></tr></table>	구분	지원내역	비고	첫째 아이	200,000	-	둘째 아이	1,000,000		셋째 아이	2,000,000		넷째 아이	3,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5,000,000	
구분	지원내역	비고																																
-	-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이상	3,000,000																																	
구분	지원내역	비고																																
첫째 아이	200,000	-																																
둘째 아이	1,000,000																																	
셋째 아이	2,000,000																																	
넷째 아이	3,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5,000,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의 출산장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아이 지원금을 증액코자 함.

2. 주요내용

현	행															
< 별표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원) <table><tr><th>구 분</th><th>지원내역</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r><tr><td>둘째 아이</td><td>500,000</td><td></td></tr><tr><td>셋째 아이</td><td>1,000,000</td><td></td></tr><tr><td>넷째 아이 이상</td><td>3,000,000</td><td></td></tr></table>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둘째 아이	500,000															
셋째 아이	1,000,000															
넷째 아이 이상	3,000,000															

개	정	안																		
< 별표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원) <table><tr><th>구 분</th><th>지원내역</th><th>비 고</th></tr><tr><td>첫째 아이</td><td>200,000</td><td>-</td></tr><tr><td>둘째 아이</td><td>1,000,000</td><td></td></tr><tr><td>셋째 아이</td><td>2,000,000</td><td></td></tr><tr><td>넷째 아이</td><td>3,000,000</td><td></td></tr><tr><td>다섯째 아이 이상</td><td>5,000,000</td><td></td></tr></table>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첫째 아이	200,000	-	둘째 아이	1,000,000		셋째 아이	2,000,000		넷째 아이	3,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5,000,000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첫째 아이	200,000	-																		
둘째 아이	1,000,000																			
셋째 아이	2,000,000																			
넷째 아이	3,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5,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8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 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

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안 제3조~제5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7조)

라. 업무 위탁 운영 근거(안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99호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

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 계층 이용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저감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4.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5조)
- 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안 제6조)
- 마. 취약시설, 저감활동 참여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안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0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법 제17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의 제목“(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을 “위촉된”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표준주택가격)및 인근 지가(주택가격)”를 “(표준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및 인근 지가(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각 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과장 또는 세무1과장”을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 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 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 격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법 제16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개 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의 정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	제2조(기능)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법 제17조 및 법 제2 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 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 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 항 4.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 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 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

현행	개정안
<u>의에 올리는 사항</u>	<u>에 관한 사항</u>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3조(구성) ①----- ----- ----- <u>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u> <u>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② <삭제>
1. <u>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2. <u>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u>	

현행	개정안
3.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u> ③ <u>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u>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u>위촉된</u> ----- -----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u>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지가(주택가격)와의 균형</u>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지가(개별주택가격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u>-----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각 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과장 또는 세무1과장</u>이 된다. ② (생략)	제7조(간사) ① ----- ----- <u>소관 업무 과장</u>-----. ②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준용 등 일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안 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나. 위원회 설치관련 적용 법률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 위원회 기능과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 규정 정비(안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 및 변경 등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4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8조의 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u>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u>부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 시 당해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 된 바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본 조례상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3)